

(2024학년도 제5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시: 2024. 5. 24(금), 14:00 ~

○ 장소: 문화관 소통룸(402호)

○ 심의 안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1	「대학원 학칙」 개정 건	교학팀
2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 건	교원인사팀
3	「교원인사규정」 개정 건	
4	「교원업무적평가규정시행규칙」 개정 건	
5	「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개정 건	
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 건	
7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건	학사관리팀
8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개정 건	
9	「직제규정」 개정 건	기획예산팀

○ 추후 일정

기구명	일시
교무위원회 심의	- 2024. 5. 28.(화)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2024. 5. 29.(수) 예정(학칙 해당)
법인이사회 심의	- 2024. 6월중(직제규정 해당)

1.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적) <생략> 제3조(학위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석·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일반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2.) ③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삭제 2021.7.6.> ⑤일반대학원 석사 특별과정과 박사 특별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7.6., 개정 2021.12.27.)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항신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변경 2002.2.15., 2004.1.15) 1.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0.3.3.)	제1조(목적) <생략>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적) <생략> 제3조(학위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석·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일반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2.) ③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삭제 2021.7.6.> ⑤일반대학원 석사 특별과정과 박사 특별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7.6., 개정 2021.12.27.)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u>②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하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예·체능계열 3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이어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단,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u>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변경 2002.2.15., 2004.1.15) 1.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0.3.3.)

현행	개정(안)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삭제 (2006.8.4.)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삭제 (2006.8.4.)
(신설)	<u>부칙</u> 이 학칙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부서간 협의 완료(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에 대한 책임시간이 동일함에 따라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명칭을 부총장으로 통일하고자 함 • 직제 개편에 따른 보직교원 책임시간 신규 추가(RIS추진단장) •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보직 중 하부기관으로 팀, 센터 등을 두는 보직을 다목으로 변경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 부총장으로 명시 • 보직교원 책임시간 신규 추가: RIS추진단장 4시간 • 혁신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평생교육원장, 미래융합대학장은 라목에서 다목으로 변경		
기대효과	• 보직교원 책임시간 조정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 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책임시간 가. <u>진천부총장/산학협력부총장</u> : 0~3시간(연간) (개정 2016.2.18., 2022.5.24.) 나. 교무위원 : 3시간(연간 6시간) 다.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LINC3.0부단장, 국제교류원부원장: 4시간(연간 8시간) (신설 2023.8.30.), (개정 2024.2.15.) 라. 행정부서 실·팀장(교직부장, IR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량개발인증센터장,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양교육지원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인권센터장, 평생학습지원센터장, 입학지원센터장, RIS지원센터장 포함), 도서관장, <u>혁신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평생교육원장, 미래융합대학장</u> : 5시간(연간 10시간) (개정 2014.11.6., 2018.6.28., 2018.10.24., 2019.1.8., 2020.2.19., 2020.3.3., 2021.3.4., 2022.11.16., 2023.8.30., 2023.12.29.) 마. <삭제 2015.2.4.> 바. <삭제 2015.2.4.>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 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책임시간 가. <u>부총장</u>: 0~3시간(연간) (개정 2016.2.18., 2022.5.24.) 나. 교무위원 : 3시간(연간 6시간) 다. <u>혁신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평생교육원장, 미래융합대학장, RIS추진단장</u>,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LINC3.0부단장, 국제교류원부원장: 4시간(연간 8시간) (신설 2023.8.30.), (개정 2024.2.15.) 라. 행정부서 실·팀장(교직부장, IR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량개발인증센터장,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양교육지원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인권센터장, 평생학습지원센터장, 입학지원센터장, RIS지원센터장 포함), 도서관장, <u><삭제></u> : 5시간(연간 10시간) (개정 2014.11.6., 2018.6.28., 2018.10.24., 2019.1.8., 2020.2.19., 2020.3.3., 2021.3.4., 2022.11.16., 2023.8.30., 2023.12.29.) 마. <삭제 2015.2.4.> 바. <삭제 2015.2.4.>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00.00.)</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3.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원인사규정」		
입안형태	☐ 제 정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겸직) ①교원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및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 타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 -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 연구, 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된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한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총장은 교원의 겸직을 허가하고자 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허가의 필요성 - 허가 대상기관의 적합성 ④학제 간 교육과 연구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2개 이상 학부(과) 또는 부서를 소속으로 하는 JA(Joint Appointment)교원을 둘 수 있으며, JA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제7조(겸직) ①교원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및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 타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 -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 연구, 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된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한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총장은 교원의 겸직을 허가하고자 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허가의 필요성 - 허가 대상기관의 적합성 ④학제 간 교육과 연구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2개 이상 학부(과) 또는 부서를 소속으로 하는 JA(Joint Appointment)교원을 둘 수 있으며, JA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u>제7조의2(징계) 총장은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외기관 겸직 또는 출강한 사실이 밝혀진 교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u>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00.00.)</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4.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규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호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항목 다각화		
관련근거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규칙」【별표 1-1】의 학생지도 구분의 학생생활지도 항목 중 평생지도교수제 및 진로지도교수제, 재정지원사업 세부항목 개정		
기대효과	업적평가 항목의 다각화로 인해 교원의 업적관리 부담감 해소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1】(개정 2012.1.1., 2016.3.7., 2016.3.22., 2019.3.1., 2021.3.4. 2022.6.30., 2023.7.27., 2023.12.29.) 교육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1】(개정 2012.1.1., 2016.3.7., 2016.3.22., 2019.3.1., 2021.3.4. 2022.6.30., 2023.7.27., 2023.12.29., <u>2024.00.00.</u>) 교육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강의	강의	책임시간 기준편성일 이행 ¹ 및	35점		(1학기+2학기)/2	강의	강의	책임시간 기준편성일 이행 ¹ 및	35점		(1학기+2학기)/2
		책임시간 초과 ¹	시간당 5점 가점	40점				책임시간 초과 ¹	시간당 5점 가점	40점	
		책임시간 미달 ¹	시간당 5점 감점					책임시간 미달 ¹	시간당 5점 감점		
		기준편성일 초과 ²	일당 5점 가점					기준편성일 초과 ²	일당 5점 가점		
		기준편성일 미만 ²	일당 5점 감점					기준편성일 미만 ²	일당 5점 감점		
		수업계획서 및 성적표 기한 내 미제출	강좌당 각 3점 감점		1학기+2학기			수업계획서 및 성적표 기한 내 미제출	강좌당 각 3점 감점		1학기+2학기
		무단결강 및 보강계획서 미제출	회당 각 3점 감점					무단결강 및 보강계획서 미제출	회당 각 3점 감점		
		강의평가 평점 ³	(담당과목 평점 평균 *25점)-100점		(1학기+2학기)/2			강의평가 평점 ³	(담당과목 평점 평균 *25점)-100점		(1학기+2학기)/2
		대단위 강의	전공 50명 초과 경우 학점당 0.5점 가점, 추가 25명당 0.5점 가점		1학기+2학기			대단위 강의	전공 50명 초과 경우 학점당 0.5점 가점, 추가 25명당 0.5점 가점		1학기+2학기
			교양 90명 초과 경우 학점당 0.5점 가점, 추가 50명당 0.5점 가점						교양 90명 초과 경우 학점당 0.5점 가점, 추가 50명당 0.5점 가점		
		영어(원어)강의	학점당 3점 가점					영어(원어)강의	학점당 3점 가점		
	교수법 ⁴	문제 중심 학습법 (Problem Based Learning), 프로젝트 중심 학습법 (Project Based Learning)	교과목당 3점 가점		1학기+2학기		교수법 ⁴	문제 중심 학습법 (Problem Based Learning), 프로젝트 중심 학습법 (Project Based Learning)	교과목당 3점 가점		1학기+2학기
		플립드러닝 교과목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플립드러닝 교과목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참여	회당 3점 가점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참여	회당 3점 가점		
		강의개선 프로그램 미참여 ⁵	회당 5점 감점					강의개선 프로그램 미참여 ⁵	회당 5점 감점		
		강의촬영 분석	회당 7점 가점					강의촬영 분석	회당 7점 가점		
		마이크로티칭 참여	회당 5점 가점					마이크로티칭 참여	회당 5점 가점		
		교수법 연구회 활동	회당 5점					교수법 연구회 활동	회당 5점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회당 2점 가점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회당 2점 가점		
		원격 교육 ⁶	K-MOOC 교과목 ⁷	신규 촬영제작 20점, 교과목 운영 7점 가점					연간	원격 교육 ⁶	
	W-MOOC 교과목 ⁷		신규 촬영제작 10점, 교과목 운영 5점 가점		W-MOOC 교과목 ⁷		신규 촬영제작 10점, 교과목 운영 5점 가점				
	KOCW 교과목 ⁸		교과목당 10점 가점		KOCW 교과목 ⁸		교과목당 10점 가점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⁹		신규 개발 4점 가점,	1학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⁹		신규 개발 4점 가점,	1학			

현행						개정(안)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기+2학기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기+2학기
		원격수업 교과목 ¹⁰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원격수업 교과목 ¹⁰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동시촬영 교과목 ¹¹	교과목당 3점 가점					동시촬영 교과목 ¹¹	교과목당 3점 가점		
학생지도	재학률	재학률 ¹²	95% 이상: 10점		4월1일 기준	재학률	재학률 ¹²		95% 이상: 10점		4월1일 기준
			90% 이상: 5점						90% 이상: 5점		
	학생생활지도	상담지도 ¹³	기본 30회(※필수)	15점	연간	학생생활지도	상담지도 ¹³	기본 30회(※필수)	15점	연간	
			31~50회 16점, 51~70회 17점, 71~90회 18점, 91~110회 19점, 111회 이상 20점					31~50회 16점, 51~70회 17점, 71~90회 18점, 91~110회 19점, 111회 이상 20점			
		성적부진 학생 ¹⁴ 및 성적경고 학생 ¹⁵ 지도	성적 향상 (학생1인당 5점이상 향상 3점 가점, 10점 이상 향상 5점 가점)	10점			성적부진 학생 ¹⁴ 및 성적경고 학생 ¹⁵ 지도	성적 향상 (학생1인당 5점이상 향상 3점 가점, 10점 이상 향상 5점 가점)	10점		
		학습공동체 지도 ¹⁶	공동체 1팀당 3점 가점				학습공동체 지도 ¹⁶	공동체 1팀당 3점 가점			
		동아리 지도교수 ¹⁷	동아리 당 2점	4점			동아리 지도교수 ¹⁷	동아리 당 2점	4점		
		OT, MT, 졸업여행 및 봉사활동 임장지도	건당 2점	4점				OT, MT, 졸업여행 및 봉사활동 임장지도	건당 2점		4점
								평생지도교수	건당 5점		5점
								진로지도교수	건당 5점		
	학문지도	석·박사 배출 ¹⁸	석사논문지도교수: 2점	10점	연간	학문지도	석·박사 배출 ¹⁸		석사논문지도교수: 2점	10점	연간
			석사논문심사교수: 1점						석사논문심사교수: 1점		
			박사논문지도교수: 4점						박사논문지도교수: 4점		
			박사논문심사교수: 2점						박사논문심사교수: 2점		
	입상지도	입상지도 ¹⁹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4점	연간		입상지도	입상지도 ¹⁹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4점	연간	
			전국대회 1, 2위: 2점						전국대회 1, 2위: 2점		
			전국대회 3, 4위: 1점						전국대회 3, 4위: 1점		
특성화 ²⁰	교육	특성화 교과과정개발	회당 5점	10점	연간	교육	특성화 교과과정개발	회당 5점	10점	연간	
		특성화 교수법특강 참여	회당 1점				특성화 교수법특강 참여	회당 1점			
	학생지도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회당 1점			학생지도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회당 1점			
		특성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사업 ²¹	교육	융합교과목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연간	재정지원사업 ²¹	교육	융합교과목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연간		
	교과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당 5점			교과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당 5점			
		서비스러닝 교과목 운영	교과목당 3점				서비스러닝 교과목 운영	교과목당 3점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²²	운영당 3점	5점		

현행						개정(안)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기타 혁신사업 프로그램 운영 ²³	프로그램당 3점					SCM 연계 유연학기제 운영 ²³	운영당 3점		
								기타 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당 3점		
1. 강의는 책임시간(학부 및 대학원)과 기준편성일 이행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대학원 및 계절수업 미포함, 교육업적은 연간점수 의미) 2. 기준편성일은 교육중심·봉사중심교원은 4일, 연구중심교원은 3일, 산학협력중심교원은 3일 이상으로 한다. 3. 강의평가 평점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4. 교수법 항목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강의평가 결과 평점 3.9 미만인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6. 원격교육 항목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신규 촬영제작에 대한 점수 부여는 최초 1회만 인정한다.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KOCW(Korea Open Course Ware) 등록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9.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준한다. 10. 원격수업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다. 11. 동시촬영(대면+비대면) 교과목은 LMS에 탑재하여야 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선정된 강좌에 한정한다. 12. 재학률은 고등교육통계 4월 1일자 기준에 따른다. 13. 상담지도는 학생을 상담하고 교내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사제동행 프로그램(성적 70점 미만)에 참여한 학생을 말한다. 15. 사제동행 프로그램(성적 65점 미만)에 참여한 학생을 말한다. 16. K-MOOC스터디, LCP, 전공학습공동체, 디딤돌학습공동체 등을 말한다. 17. 동아리 지도교수는 학생복지팀에 등록된 총동아리와 학과동아리만 인정한다. 18. 석, 박사 배출은 본교 대학원 석, 박사 배출을 의미한다. 19. 임상지도는 전공과 관련된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수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단, 산학협력업적평가의 캡스톤 디자인 임상지도 부분은 중복하지 않는다. 20. 특성화 업적은 특성화추진단 및 산학연교육지원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7.27.) 21. 혁신사업단 및 LINC3.0사업단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은 역량개발인증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6.30.)						1. 강의는 책임시간(학부 및 대학원)과 기준편성일 이행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대학원 및 계절수업 미포함, 교육업적은 연간점수 의미) 2. 기준편성일은 교육중심·봉사중심교원은 4일, 연구중심교원은 3일, 산학협력중심교원은 3일 이상으로 한다. 3. 강의평가 평점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4. 교수법 항목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강의평가 결과 평점 3.9 미만인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6. 원격교육 항목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신규 촬영제작에 대한 점수 부여는 최초 1회만 인정한다.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KOCW(Korea Open Course Ware) 등록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9.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준한다. 10. 원격수업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다. 11. 동시촬영(대면+비대면) 교과목은 LMS에 탑재하여야 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선정된 강좌에 한정한다. 12. 재학률은 고등교육통계 4월 1일자 기준에 따른다. 13. 상담지도는 학생을 상담하고 교내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사제동행 프로그램(성적 70점 미만)에 참여한 학생을 말한다. 15. 사제동행 프로그램(성적 65점 미만)에 참여한 학생을 말한다. 16. K-MOOC스터디, LCP, 전공학습공동체, 디딤돌학습공동체 등을 말한다. 17. 동아리 지도교수는 학생복지팀에 등록된 총동아리와 학과동아리만 인정한다. 18. 석, 박사 배출은 본교 대학원 석, 박사 배출을 의미한다. 19. 임상지도는 전공과 관련된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수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단, 산학협력업적평가의 캡스톤 디자인 임상지도 부분은 중복하지 않는다. 20. 특성화 업적은 특성화추진단 및 산학연교육지원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7.27.) 21. <u>혁신사업단, LINC3.0사업단 등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u> 다만,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은 역량개발인증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6.30.)(개정 2024.00.00.) 22. <u>공유형 마이크로디그리(대학 공동형) 운영에 한정한다.(개정 2024.00.00.)</u> 23. <u>SCM유연학기제란 자율학기(S), 집중이수(C), 유연학기(M)를 말한다.(개정 2024.00.00.)</u>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00.00.)</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5.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업적별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개정 2017.9.8., 2022.6.30., 2023.12.29.)						【별표 1】 업적별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개정 2017.9.8., 2022.6.30., 2023.12.29. <u>2024.00.00</u>)						
〈교육·봉사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교육·봉사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 산출 방법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 산출 방법	
교육	강의	책임시간 및 기준편성일 이행 ¹	25점	35점	(1학기 +2학기)/2	강의	책임시간 및 기준편성일 이행 ¹	25점	35점	(1학기 +2학기)/2		
		책임시간 초과 ¹	시간당 2점 가점				책임시간 초과 ¹	시간당 2점 가점				
		책임시간 미달 ¹	시간당 2점 감점				책임시간 미달 ¹	시간당 2점 감점				
		기준편성일 초과 ²	일당 2점 가점				기준편성일 초과 ²	일당 2점 가점				
		기준편성일 미만 ²	일당 2점 감점				기준편성일 미만 ²	일당 2점 감점				
		강의계획서 및 성적표 기한 내 미제출	강좌당 각 3점 감점	연간			강의계획서 및 성적표 기한 내 미제출	강좌당 각 3점 감점	연간			
		무단결강 및 보강계획서 미제출	회당 각 3점 감점				무단결강 및 보강계획서 미제출	회당 각 3점 감점				
		강의평가 평점 ³	(담당과목 평점 평균*25점)-100점	25점	(1학기 +2학기)/2		강의평가 평점 ³	(담당과목 평점 평균*25점)-100점	25점	(1학기 +2학기)/2		
		교수법	교수법특강	회당 2점 가점	10점		연간	교수법	교수법특강	회당 2점 가점	10점	연간
	교수법워크숍 참석		회당 2점 가점	교수법워크숍 참석		회당 2점 가점						
	강의개선 프로그램 미참여 ⁴		회당 2점 감점	강의개선 프로그램 미참여 ⁴		회당 2점 감점						
	강의촬영 분석		회당 3점 가점	강의촬영 분석		회당 3점 가점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회당 1점 가점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회당 1점 가점						
	학생 생활 지도	상담지도 ⁵	기본 30회	10점	연간	학생 생활 지도	상담지도 ⁵	기본 30회	10점	연간		
							평생지도교수	전당 5점			5점	
							진로지도교수	전당 5점				
		재정 지원 사업 ⁶					재정 지원 사업 ⁶	융합교과목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5점	연간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당 5점				
서비스러닝 교과목 운영	교과목당 3점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⁷	운영당 3점											
SCM 연계 유연학기제 운영 ⁸	운영당 3점											
기타 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당 3점											
봉사	입학 활동 ⁹	고교연계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회당 2점	10점	연간	봉사	입학 활동 ⁹	고교연계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회당 2점	10점	연간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 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 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교내 보직 ⁷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LINC3.0사업부단장, 한방병원장	5점	10점	연간	교내 보직 ¹⁰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LINC3.0사업부단장, 한방병원장	5점	10점	연간		

현행						개정(안)					
		학과(부)장	3점					학과(부)장	3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기타 보직	2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기타 보직	2점		
								<u>교외 보직</u>			
								<u>국제 및 전국 학·예술단체¹⁾ 회 장</u>	<u>5점</u>		
								<u>국제 및 전국 학·예술단체 인 원</u>	<u>3점</u>		
								<u>국제 및 전국 학·예술대회 좌 장, 사회, 토론, 발표</u>	<u>1점</u>		
1. 강의는 책임시간(학부 및 대학원)과 기준편성일 이행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대학원 및 계절수업 미포함, 교육업적은 연간점수 의미) 2. 기준편성일은 4일로 한다. 3. 강의평가 평점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4. 강의평가 결과 평점 3.9 미만인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5. 상담지도는 학생을 상담하고 교내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입학활동은 입학처에 등록된 활동을 말한다. 7. 교내보직에 대해서 겸직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며, 기타 보직은 책임시간을 감경 받는 보직을 의미한다.						1. 강의는 책임시간(학부 및 대학원)과 기준편성일 이행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대학원 및 계절수업 미포함, 교육업적은 연간점수 의미) 2. 기준편성일은 4일로 한다. 3. 강의평가 평점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4. 강의평가 결과 평점 3.9 미만인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5. 상담지도는 학생을 상담하고 교내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u>혁신사업단, LINC3.0사업단 등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전공, 교 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은 역량개발인증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 한다. (개정 2024.00.00.)</u> 7. <u>공유형 마이크로디그리(대학 공동형) 운영에 한정한다.(개정 2024.00.00.)</u> 8. <u>SCM유연학기제란 자율학기(S), 집중이수(C), 유연학기(M)를 말한다.(개정 2024.00.00.)</u> 9. 입학활동은 입학처에 등록된 활동을 말한다. 10. 교내보직에 대해서 겸직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며, 기타 보직은 책임시간을 감 경 받는 보직을 의미한다. 11. <u>학·예술단체 임원은 명예회장, 고무,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간사, 편집위원장, 편 집위원, 학술위원을 말한다.</u>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00.00.)</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6.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대한 항목 다각화		
관련근거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별표 1-1】 학생생활지도 세부항목 개정 및 재정지원사업 구분의 세부항목 개정		
기대효과	• 업적평가 추가 점수 반영으로 인해 교원의 업적관리 부담감 해소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1】(신설 2022.6.30.), (개정 2023.12.29.)						【별표 1-1】(신설 2022.6.30.), (개정 2023.12.29., 2024.00.00.)									
비정년트랙 강의중심교원 정량평가(교육업적)						비정년트랙 강의중심교원 정량평가(교육업적)									
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강의	강의	책임시간 및 강의편성일 이행	15점		연간/2	강의	책임시간 및 강의편성일 이행	15점		연간/2	강의	책임시간 초과 ¹	시수 당 2점 가점	10점	연간/2
		책임시간 미달 ¹	시수 당 2점 감점				책임시간 미달 ¹	시수 당 2점 감점							
		강의편성일 초과 ²	일 당 2점 가점				강의편성일 초과 ²	일 당 2점 가점							
		강의편성일 미만 ²	일 당 5점 감점		연간		강의편성일 미만 ²	일 당 5점 감점		연간					
		수업계획서 및 성적표 기한 내 미제출	과목당 각 3점 감점				연간	수업계획서 및 성적표 기한 내 미제출	과목당 각 3점 감점				연간		
		무단결강 및 보강 미준수	회당 각 5점 감점		무단결강 및 보강 미준수			회당 각 5점 감점							
		강의평가 평점 ³	(담당과목 평점 평균*25점)-100점		연간/2		강의평가 평점 ³	(담당과목 평점 평균*25점)-100점		연간/2					
		영어(원어)강의	학점당 3점 가점				영어(원어)강의	학점당 3점 가점							
		교수법 ⁴	문제중심학습법 (Problem Based Learning), 프로젝트중심학습법 (Project Based Learning)	교과목당 3점 가점	30점		연간	교수법 ⁴	문제중심학습법 (Problem Based Learning), 프로젝트중심학습법 (Project Based Learning)	교과목당 3점 가점		30점	연간		
	플립드러닝 교과목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30점		연간			플립드러닝 교과목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강의개선 프로그램 미참여 ⁵		회당 5점 감점						강의개선 프로그램 미참여 ⁵	회당 5점 감점					
	강의활영 분석		회당 7점 가점						강의활영 분석	회당 7점 가점					
	마이크로티칭 참여		회당 5점 가점						마이크로티칭 참여	회당 5점 가점					
	교수법 연구회 활동		회당 5점						교수법 연구회 활동	회당 5점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회당 2점 가점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회당 2점 가점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참여		회당 2점 가점(상한 20점)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참여	회당 2점 가점(상한 20점)					
	원격교육 ⁶	K-MOOC 교과목 ⁷	신규 촬영제작 20점, 교과목 운영 7점 가점	연간	원격교육 ⁶	K-MOOC 교과목 ⁷	신규 촬영제작 20점, 교과목 운영 7점 가점	연간							
		W-MOOC 교과목 ⁷	신규 촬영제작 10점, 교과목 운영 5점 가점			W-MOOC 교과목 ⁷	신규 촬영제작 10점, 교과목 운영 5점 가점								
KOCW 교과목 ⁸		교과목당 10점 가점	KOCW 교과목 ⁸			교과목당 10점 가점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⁹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⁹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원격수업 교과목 ¹⁰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원격수업 교과목 ¹⁰			신규 개발 4점 가점, 교과목 운영 3점 가점									

현행						개정(안)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동시촬영 교과목 ¹¹	교과목당 3점 가점					동시촬영 교과목 ¹¹	교과목당 3점 가점		
학생지도	재학률	중도학생탈락율 ¹²	1% 감소당 0.5점 가점	5점			재학률	중도학생탈락율 ¹²	1% 감소당 0.5점 가점	5점	
	학생생활지도	상담지도 ¹³	기본 30회 10점 31-40회 11점, 41-50회 12점, 51-60회 13점, 61-70회 14점, 71회 이상 15점	15점	연간		학생생활지도	상담지도 ¹³	기본 30회 10점 31-40회 11점, 41-50회 12점, 51-60회 13점, 61-70회 14점, 71회 이상 15점	15점	연간
		성적 부진 학생 ¹⁴ 및 성적 경고 학생 ¹⁵ 지도	성적 향상 (학생1인당 5점 이상 향상 3점 가점, 10점 이상 향상 5점 가점)	10점	연간			성적 부진 학생 ¹⁴ 및 성적 경고 학생 ¹⁵ 지도	성적 향상 (학생1인당 5점 이상 향상 3점 가점, 10점 이상 향상 5점 가점)	10점	연간
		학습공동체 지도 ¹⁶	공동체 1팀당 3점 가점	6점				학습공동체 지도 ¹⁶	공동체 1팀당 3점 가점	6점	
		동아리 지도교수 ¹⁷	동아리 당 2점	4점				동아리 지도교수 ¹⁷	동아리 당 2점	4점	
		OT, MT, 졸업여행 및 봉사활동 임장지도	건당 2점	4점				OT, MT, 졸업여행 및 봉사활동 임장지도	건당 2점	4점	
								평생지도교수	건당 5점	5점	연간
								진로지도교수	건당 5점	5점	
	학문지도	석·박사 배출 ¹⁸	석사논문지도교수: 5점 석사논문심사교수: 1점 박사논문지도교수: 10점 박사논문심사교수: 2점	15점	연간		학문지도	석·박사 배출 ¹⁸	석사논문지도교수: 5점 석사논문심사교수: 1점 박사논문지도교수: 10점 박사논문심사교수: 2점	15점	연간
	입상지도	입상지도 ¹⁹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4점 전국대회 1, 2위: 2점 전국대회 3, 4위: 1점	8점	연간		입상지도	입상지도 ¹⁹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4점 전국대회 1, 2위: 2점 전국대회 3, 4위: 1점	8점	연간
특성화 ²⁰	교육	특성화 교과목 개발	과목당 4점	10점	연간		교육	특성화 교과목 개발	과목당 4점	10점	연간
	학생지도	특성화 교과목 운영	과목당 3점				학생지도	특성화 교과목 운영	과목당 3점		
재정지원사업 ²¹	교육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회당 1점		연간		교육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회당 1점		연간
	교과	특성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과	특성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사업 ²¹	교육	교과목	신규 개발 4점 운영 3점		연간		교육	교과목	신규 개발 4점 운영 3점		연간
	교과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당 5점				교과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당 5점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²²	운영당 3점	5점	

현행						개정(안)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기타 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당 3점					SCM 연계 유연학기제 운영 ²³	운영당 3점		
								기타 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당 3점		
- 강의는 책임시간(학부 및 대학원)과 강의편성일 이행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대학원 및 계절수업 미포함, 교육업적은 연간점수 의미) - 강의편성일은 강의중심 4일, 특임중심 3일 이상으로 한다. - 강의평가 평점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 교수법 항목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강의평가 결과 평점 3.9 미만인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 원격교육 항목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신규 촬영제작에 대한 점수 부여는 최초 1회만 인정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KOCW(Korea Open Course Ware) 등록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준한다. - 원격수업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다. - 동시촬영(대면+비대면) 교과목은 LMS에 탑재하여야 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선정된 강좌에 한정한다. - 중도학생탈락율은 고등교육통계 4월 1일자 학과 평균값 기준에 따른다. 중도학생탈락율 산식은 (사유별중도탈락학생/재적학생)*100으로 한다. - 상당지도는 학생을 상당하고 교내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매학기말 평균 성적 70점 미만(학칙 제 3절)이며 현 사제동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말한다. - 매학기말 평균 성적 65점 미만(학칙 제 3절 제 46조)이며 현 사제동행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을 말한다. - 학습공동체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K-MOOC스터디, LCP, 전공학습공동체, 디딤돌학습공동체를 말한다. - 동아리 지도교수는 학생복지팀에 등록된 총동아리와 학과동아리만 인정한다. - 석, 박사 배출은 본교 대학원 석, 박사 배출을 의미한다. - 입상지도는 전공과 관련된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수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단, 산학협력업적평가의 캡스톤 디자인 입상지도 부분은 중복하지 않는다. 단체의 경우 1건으로 처리한다. - 특성화 업적은 특성화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 혁신사업단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은 역량개발인증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 강의는 책임시간(학부 및 대학원)과 강의편성일 이행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대학원 및 계절수업 미포함, 교육업적은 연간점수 의미) - 강의편성일은 강의중심 4일, 특임중심 3일 이상으로 한다. - 강의평가 평점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 교수법 항목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강의평가 결과 평점 3.9 미만인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 원격교육 항목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신규 촬영제작에 대한 점수 부여는 최초 1회만 인정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KOCW(Korea Open Course Ware) 등록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준한다. - 원격수업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다. - 동시촬영(대면+비대면) 교과목은 LMS에 탑재하여야 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선정된 강좌에 한정한다. - 중도학생탈락율은 고등교육통계 4월 1일자 학과 평균값 기준에 따른다. 중도학생탈락율 산식은 (사유별중도탈락학생/재적학생)*100으로 한다. - 상당지도는 학생을 상당하고 교내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매학기말 평균 성적 70점 미만(학칙 제 3절)이며 현 사제동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말한다. - 매학기말 평균 성적 65점 미만(학칙 제 3절 제 46조)이며 현 사제동행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을 말한다. - 학습공동체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K-MOOC스터디, LCP, 전공학습공동체, 디딤돌학습공동체를 말한다. - 동아리 지도교수는 학생복지팀에 등록된 총동아리와 학과동아리만 인정한다. - 석, 박사 배출은 본교 대학원 석, 박사 배출을 의미한다. - 입상지도는 전공과 관련된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수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단, 산학협력업적평가의 캡스톤 디자인 입상지도 부분은 중복하지 않는다. 단체의 경우 1건으로 처리한다. - 특성화 업적은 특성화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혁신사업단, LINC3.0사업단 등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은 역량개발인증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4.00.00.) 공유형 마이크로디그리(대학 공동형) 운영에 한정한다.(개정 2024.00.00.) SCM유연학기제란 자율학기(S), 진중이수(C), 유연학기(M)를 말한다.(개정 2024.00.00.)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00.00.)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7.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없음		
대학평의회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모집단위 이동(전과) 신청 시 이동 희망 학과의 Academic Advisor와의 상담을 통해 학과 소개, 졸업요건, 진로 지도 등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관련근거 (관계법령)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모집단위 이동(전과) 신청 시 이동 희망 학과의 Academic Advisor의 상담과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신청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		
기대효과	Academic Advisor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전과 희망 학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현행
제16조(이동 횟수 및 신청시기) ①모집단위간 이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0.1.28., 2024.2.26.) ②모집단위간 이동은 6월초 또는 12월초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편입생이 최초 입학한 학기에 모집단위간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2024.2.26.) ③(신설 2021.1.27.), <삭제 2024.2.26.>	제16조(이동 횟수 및 신청시기) 좌동
제17조(선발인원 및 방법) ①선발인원은 각 모집단위별로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은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 간 이동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미래융합대학 학생은 타 단과대학 모집단위로의 이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7.9.4., 2010.1.20., 2021.1.27., 2024.2.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정원의 포함), 작업치료학과 및 물리치료학과로의 이동은 모집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4., 2010.1.20., 2018.4.6., 2021.1.27.) ③(삭제 2018.2.24.)	제17조(선발인원 및 방법) 좌동
제18조(모집단위간 이동 자격) ①모집단위간 이동은 전학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14., 2015.9.17., 2024.2.26.) ② <삭제 2009.9.14.>	제18조(모집단위간 이동 자격) 좌동
제19조(모집단위간 이동절차) 모집 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집단위간 이동신청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학과(부)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7., 2023.1.30.)	제19조(모집단위간 이동절차) 모집 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자는 <u>Academic Advisor의 상담과(추가)</u> 지원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집단위간 이동신청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학과(부)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7., 2023.1.30.)
제20조(학점 이수) ①모집단위간 이동이 허용된 자는 해당학과(부)의 최소 전공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교과목인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유사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과(부)	제20조(학점 이수) 좌동

현행	현행
의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의 교과목의 학점은 자유선택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1조(장학금 지급제한) <삭제 2021.1.27.> 제21조의2(모집단위 명칭변경에 따른 소속변동) ①모집단위 명칭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소속된 학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모집단위의 명칭변경에 따른 소속 변동은 모집단위간 이동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15.3.19.)	제21조(장학금 지급제한) 좌동 제21조의2(모집단위 명칭변경에 따른 소속변동) 좌동

8.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조기시험의 한정적인 사유를 개선하여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4조(조기시험) 문구 신설 -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경과 후 군입대, <u>기타 부득이한 사유</u> 로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조기시험 신청서를 제출한다.		
기대효과	• 조기시험의 한정적인 사유를 개선하여 원활한 학사운영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조기시험)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경과 후 군입대 <u>(문구신설)</u> 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조기시험신청서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기시험)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경과 후 군입대, <u>기타 부득이한 사유</u> 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조기시험신청서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총장 직속기관)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u>〈단, 본부(조직) 신설〉</u>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홍보실을 둔다.	제5조(총장 직속기관)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u>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u> ,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홍보실을 둔다.
제9조(부속지원기관) 본교에 다음의 부속지원기관을 두며, 각 부속지원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3.(생략) 4. <u>체육부</u> 5.~12.(생략)	제9조(부속지원기관) 본교에 다음의 부속지원기관을 두며, 각 부속지원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 3(현호와 같음) 4. <u>〈호 삭제〉</u> 5 ~ 12(현호와 같음)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u>〈문구 신설〉</u> 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비서실, 창업지원단, 인권센터, 홍보실의 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새만금연구단의 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 ②(생략) ③LINC3.0사업단에는 <u>〈문구 신설〉</u> 부단장, 국제교류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u>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u> 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비서실, 창업지원단, 인권센터, 홍보실의 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새만금연구단의 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LINC3.0사업단 <u>및 스포츠단에는</u> 부단장, 국제교류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
제18조(하부기관장) ①총장 직속기관 및 각 처의 하부기관으로 팀, 센터 등을 두며, 하부기관의 장은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하부기관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u>〈문구 신설〉</u>	제18조(하부기관장) ①현행과 같음 ②하부기관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u>다만, 스포츠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u>〈조 신설〉</u>	제20조의 3(<u>글로벌30추진본부</u>) <u>글로벌30추진본부에 글로벌30추진본부사무국을 둔다.</u>
<u>〈조 신설〉</u>	제20조의 4(<u>스포츠단</u>) <u>스포츠단은 전주·진천캠퍼스에 각각 스포츠지원센터를 둔다.</u>
제26조의 2(특별기구) 특별기구에 혁신사업단, RIS추진단 <u>〈센터 신설〉</u> 을 두고 총장직속으로 운영한다.	제26조의 2(특별기구) 특별기구에 혁신사업단, RIS추진단, <u>통일교육센터</u> 를 두고 총장직속으로 운영한다.
<u>〈신설〉</u>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 . .))</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